

「구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근한 의원 외 2인

2. 찬 성 자 : 김낙관 의원 외 5인

3. 제안이유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5조의2 및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에 정착·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전담부서 지정 및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~ 제5조)
-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적극행정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~ 제8조)
- 적극행정 공무원 포상 및 면책 등에 관한 사항(안 제9조 ~ 제10조)
- 운영세칙(안 제11조)

5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행정기본법」 제4조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5조의2
-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6조 ~ 제10조, 제13조 ~ 제17조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적극행정 추진 및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도화하여,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소극행정 예방뿐만 아니라 기술·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 의무를 부과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, 정책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,(제3조)
- 그간 내부 방침으로 관리되던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책임관 지정을 조례에 명시하고, 심의 전 실무 검토 등을 위한 적극행정실무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.(제4조, 제8조)
- 또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을 밀착 지원하는 보호관 규정을 신설하고, 인사상 우대조치 및 포상 근거를 구체화함으로써 조직 내 사기 진작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.(제4조, 제9조, 제10조)

- 종합적으로 최근 복잡다단해지는 민원 환경과 법적 분쟁의 증가로 공직사회 내 무사안일이나 소극행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, 본 조례안은 공무원에게는 안전한 업무환경을, 시민에게는 우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립할 것으로 기대되며, 상위법 위반 사항 등의 문제점 역시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따라서 본 조례의 전부 개정은 구미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공직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필수적인 절차로 사료됨.
- 다만, 집행기관에서는 건전한 적극행정 문화의 정착을 위해 면책 및 지원 결정 시에는 내부적인 온정주의를 배격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,
- 조례의 규정이 문서상의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, 실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실무 부서와 적극행정 보호관 및 전담부서와의 핫라인을 활성화하고, 또한 발굴된 우수 사례는 시정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